– 서울시립대학교 제1공학관 철거공사 –

공 사 설 명 서

<본 공사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2020. 04.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시설과)

1. 공 사 설 명 서

※ 알림 : 본 공사 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임을 유념하시여 입찰참가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설명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역점 추진 중인 미래융합관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신축공사를 위한 부지 내 기존건축물인 제1공학관에 대한 철거공사를 아래와 같이 설명함

가. 공 사 명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철거공사

나.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694) / 제1공학관

다. 공사내용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철거공사

- 구조물(지상층) 및 각종 부착물, 장비류 철거(전층)
- 공사용 가설울타리 설치 등

라.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에 위치한 서울시립대 미래융합관 설립공사의 일환으로 사업부지 내 기존 시설물(제1공학관)을 철거하여 미래융합관 건립 부지를 조성하고, 철거공사를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 공사의 범위

(1) 철거대상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2) 규 모 : 1개동
(3) 연 면 적 : **총 연면적(4,838.24m^2)**
(4) 구조형식 : 철근콘크리트구조
(5) 용 도 : 교육연구시설

바. 공사기간

본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100일 이내**로 하며, 폐기물처리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본 철거공사 기간은 관할구청의 관련규정에 의한 철거심의 및 석면제거에 대한 허가사항 등 철거를 위한 사전 행정업무 일정을 포함한 기간임,

본 부지는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대학교 부지로써 여름방학 학사일정 정해진 실정으로 여름방학 내 소음 분진 공사를 완료하여 학생들의 수업이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공사이며, 공기연기나 지연이 되지 않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유념하여 입찰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사. 공사기한 연기

(1) 연기 요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8절 2.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불가피하게 주변 민원인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 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

(1)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한다.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6절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2) 변경요청 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자. 공사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설계서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건축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기 그 해당 사항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2) 설계도서 적용순위

- 공사수행에 있어서의 도서간 내용이 상이 할 시는 그 순위를 아래의 순위로 적용한다.

① 시방서, ② 설계도, ③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④ 건축학회 건축공사

(3) 본 시방서 이 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관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표기된 특정명칭(자재, 공법 등)은 품질기준을 위한 기준이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차. 기 타

(1)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상호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해석 등 협의하여 따른다.

(2) 구조물 철거공사 후 후속공사 착공까지는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한 안전한 공법으로 마무리한다.

(3) 이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행한다.

(4) 일반사항

1)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3) 시공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4)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5)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한다.

6) 계약상대자는 시공 완료 후 건축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 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7) 가시설물(가설울타리,비계,안전망,보호막,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8)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전까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 ○ 굴착공사 시 토사유출, 하수유출 등으로 인접지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 및 계측관리시설을 설치한다.
   -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를 점검하고 기능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전조치
10)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재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11)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12) 계약상대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 한다.
13)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14)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당해 공사는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사업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함.
15) 공사장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한 안전관리비는 공사준공 시 정산처리를 한다.
16) 공기연장 조건
   -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
   - ○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한 공사 중단 및 동절기 습식공사 일수
17)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18) 인접 나대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한다.

19)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20)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1) 도급자는 작업장이 업무로 인해 주중에 사무실을 비울 수 없는 곳은 주말 및 휴일 공사를 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는 원상복구를 철저히 해야 하고 공사일정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22)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 ○ 철거공사 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원과 장비를 충분히 동원하여 하여야 한다.
- ○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부담·처리하되 합법적인 절차에 의거 수집·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3)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한다.

<코로나 19>관련 사항

우리대학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에 따른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에 노동자 투입 전 매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와 체온 확인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하여야 함

☞ 중국 후베이성 지역 등에 다녀온 노동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문의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 예방 에 적극 동참하여함.

카.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안전관리계획(건설기술진흥법)

(2)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한국시설안전공단)

(4) 기타 관련 표준시방 등

Ⅱ. 석면해체공사

1. 공 사 설 명 서

가. 과 업 명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석면해체 공사

나. 과업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694)

다. 과업내용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석면해체 공사

라. 과업의 목적

본 공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694)에 위치한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석면해체작업을 실시하여 철거공사 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석면해체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마. 과업의 범위

(1) 석면해체 대상 : 서울시립대 제1공학관

(2) 규　　모 : 총 1개동

(3) 해체면적 : **6,610.89m²**

- 석면천정재, 내벽체, 간막이재 : 2,209㎡
- 천장 뿜칠재 : 3,152㎡

바. 공사시방서

본 공사의 공사시방서 내용은 붙임「공사시방서」와 같음

사. 공사기간

본 석면제거 공사는 착수일로부터 **20일**로 한다.

아. 일반사항

이 설계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 해체공사 상 관련규정에서 필요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자. 관계 법령 및 기준 준수

1) 계약상대자는 석면해체 및 제거에 있어「산업안전보건법」,「석면안전관리법」및「폐기물관리법」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석면해체 및 제거에 있어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차. 기 타

본 설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며, 상호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다.

카. 계약상대자의 책무

1) 계약상대자는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형사상 법적 문제와 그로 인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3) 계약상대자는 민원 발생 시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석면관련 전문기관 또는 석면 전문가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 본 공사 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임을 유념하시여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